

예금은행 금리조사표 작성방법

2023. 5월 현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차 례

- I. 조사표 구성 및 작성요령 개요
- II. 금리조사표 작성방법 : 공통사항 안내
- III. 주요 여수신 금리조사표
 - 1. 은행계정 수신금리
 - 2. 은행계정 대출금리
 - 3. 고정금리 및 특정금리연동 대출금리 및 규모
 - 4. 기타 사항
- IV. 기타 세부내역
 - 1. 공통사항 안내
 - 2. 정기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 취급현황
 - 3. 주체별 용도별 대출금 취급현황
- V. 오류검증 안내
 - 1. 주요 여수신 금리조사표 오류검증
 - 2. 기타 세부내역 오류검증

[참고 목록]

- <참고 1> 은행코드
- <참고 2> 가중평균금리 산출식
- <참고 3> 우대금리 적용 예시
- <참고 4> 주체별 포괄범위
- <참고 5> 공공부문 지원대출상품 포함여부
- <참고 6>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대출 금리 작성 방법
- <참고 7> 금리조사표 작성시 포괄범위
- <참고 8> 회전식 정기예금 관련 주의사항
- <참고 9> 창구발행 및 중개기관 경유 발행
- <참고 10> 담보형태별 대출금 분류

I. 조사표 구성 및 작성요령 개요

- 예금은행 금리조사표는 아래와 같이 ‘주요 여수신금리 조사표’를 중심으로,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및 주체별 용도별 대출금의 세부내역을 조사하는 6개의 shee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내용	조사표	Sheet이름
1. 주요 여수신금리	주요 여수신금리 조사표	‘주요여수신’Sheet
2. 기타 세부내역	정기예금 취급현황(신규기준)	‘수신금리(1)’Sheet
	” (잔액기준)	‘수신금리(2)’Sheet
	양도성예금증서 취급현황(신규기준)	‘수신금리(3)’Sheet
	주체별 용도별 대출금 취급현황(신규기준)	‘대출금리(1)’Sheet
	” (잔액기준)	‘대출금리(2)’Sheet

- 금리조사표 작성시 파란색, 노란색, 회색으로 표시된 영역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작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색깔이 없는 영역에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란색 : 수식으로 자동계산되는 셀이므로 숫자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다만, 입력하신 숫자의 합 또는 평균이 셀에 나타난 숫자와 다르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란색 : 입력하지 않는 셀입니다.

- 회색 : 각종 검증수식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삭제를 금합니다.

- 금리조사표 파일은 별도의 변환이나 입력작업 없이 원본파일 그대로 전산집계 처리되오니, 파일양식(Sheet명, 셀위치 등)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송부파일명 역시 당행이 지정한 파일명을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 파일명은 'IR+은행코드+YYMM.xls(예:우리은행 2023.5월분의 경우 IR21022305.xls)'로 저장하여 익월 15일까지 DACOS로 전송해 주십시오.(<참고 1> 은행코드 참조)

- 금리조사표를 작성한 후 기관장의 (서면 또는 전자)결재를 받은 후 '송부공문' Sheet에 <문서번호, 발신일자, 기관장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재받은 금리조사표는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시 제출할 수 있도록 원본 파일 또는 출력본의 형태로 1년 이상 보관 요망

- 금리조사표 작성시, 작성방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품의 출시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금리조사표 담당자와 상의하여 정확한 통계작성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은행코드

은행코드	은행명(시중)	은행코드	은행명(지방)	은행코드	은행명(특수)
2102	우리은행	2201	대구은행	3100	기업은행
210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202	부산은행	3400	농협은행
2106	신한은행	2204	광주은행	3500	수협은행
2107	한국씨티은행	2205	제주은행	4001	산업은행
2111	하나은행	2207	전북은행		
2115	국민은행	2209	경남은행		
2117	케이뱅크				
2118	카카오뱅크				
2119	토스뱅크				

Ⅱ. 금리조사표 작성방법 : 공통사항 안내

* 금리조사표 6개의 sheet에 기재되는 수치는 조사항목별로 금액(신규취급액, 잔액)과 금리(신규취급액, 잔액)로, 아래의 공통된 기준을 숙지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금액

□ **신규취급액**은 해당월중 신규로 취급된 수신(대출)의 월중 불입액(대출실행액)으로서 월중 신규취급 되었다가 해지(상환)된 수신(대출)도 포함. 단, 금융채의 경우는 신규발행액(액면가)을 신규취급액으로 간주

— 수신(대출)의 경우 약정만기내 회전기간 도래 후 자동 재예치분은 신규취급액에서 제외(자세한 사항은 p. 12 <참고 8> 회전식 정기예금 관련 주의사항 참조)

— 대출의 경우 기존대출을 상환키 위한 **대환대출** 및 기존 대출의 **재약정**을 포함

※ 기존대출의 단순만기연장(당초 계약을 유지하되 상환시점만 연기되는 경우)은 신규에서 제외

□ **잔액**은 월말잔액으로서 대출의 경우는 정상계좌 및 연체계좌 잔액을 모두 포함하며 금융채의 경우는 액면가 기준 월말잔액을 기재

□ 단위는 백만원으로 반올림하여 작성

(2) 금리

□ 모든 금리는 연리이며, **신규취급액기준 금리**는 신규취급된 실행금리를, **잔액기준 금리**는 월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리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참고 2> 가중평균금리 산출식 참조)

— 월중 신규취급되어 월중 해지(상환)된 수신(대출)의 경우에도 신규취급시 실행금리를 적용

— 할인식으로 발행되는 CD, 표지어음매출의 경우 할인율을 연수익률로 환산

— 금융채는 발행수익률을 적용하고,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요구불예금의 경우 매월말(가)결산시 작성하는 이문율*을 적용

* ((손익계산서상 월중지급이자총액)/(월중평균잔액))×365/(월중일수)

— 만기이후 해약하지 않고 재예치도 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상품에 적용되는 만기후 금리를 적용

<참고 2>

가중평균금리 산출식

신규취급액 가중평균금리 =
$$\frac{\sum(\text{건별 실행금리} \times \text{건별 신규취급액})}{\sum(\text{신규취급액})}$$

잔액 가중평균금리 =
$$\frac{\sum(\text{건별 금리} \times \text{건별 월말잔액})}{\sum(\text{월말잔액})}$$

- 특정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들의 경우,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를 인지 가능한 시점에 이를 판단하여 금리조사표에 반영
 - 은행 내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조건들의 경우, 매월 금리조사표를 작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 신규취급액 및 잔액 금리를 작성
 - 타 기관(저축은행, 카드사 등)과 관련된 우대조건이 존재하는 상품의 경우, 상대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는 시점(즉, 우대조건 충족여부를 인지가능한 시점)에 우대금리 제공여부를 판단하여 반영(<참고 3> 우대금리 적용 예시 참조)

<참고 3>

우대금리 적용 예시

예시	
상품종류	정기적금(B 카드사 연계)
만기	1년
금리조건	기본금리 2% + 우대금리
우대조건	1. 비대면 가입시 +0.5%p 2. 급여이체조건을 기간 중 6개월 이상 만족시 +0.5% 3. 1년간 B 신용카드 실적 충족 시 +0.5%p

- 우대조건 1. : 동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신규취급액 기준 2% 또는 2.5%로 기재
- 우대조건 2. : 은행 내부 시스템을 통해 충족여부확인 가능하므로, 동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추가금리(0.5%p)를 잔액 기준 자료에 반영
- 우대조건 3. : 타 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해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시점에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추가금리(0.5%p)를 잔액 기준 자료에 반영

- 연체된 대출의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을 포함하여 잔액기준 금리를 작성

* 연체가산이자율 =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3) 기간분류 : 약정만기 기준

- 수신 및 대출항목별로 기간분류가 필요한 경우 이는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회전식 정기예금 및 만기연장 된 대출에 한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p. 12의 <참고 8> 회전식 정기예금 관련 주의사항, p. 16의 III. 주요 여수신 금리조사표 - 2. 은행계정 대출금리 참조)

(4) 주체별 분류

- 기업은 정부관리기업을 포함한 영리법인기업 및 개인기업, 가계는 개인, 공공 및 기타는 지방자치단체, 정부기업 등 공공기관과 학교법인 등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 4> 주체별 포괄범위 참조

<참고 4> 주체별 포괄범위

주체 구분	포괄범위
기업	『통화금융통계조사표 작성 편람』 p.200의 “1. 금융부문*”, “3. 기업부문”에 해당.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법인 및 비법인 기업(금융기관 포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여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공기업, 기업 봉사형 민간비영리단체 등을 포괄 * 1.1.1 중앙은행, 1.1.2 은행예금취급기관 제외
가계	『통화금융통계조사표 작성 편람』 p.200의 “4.1.1.일반가계”에 해당. 금융거래실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정보로 삼는 경제주체를 의미하나 실제 거래내용이 사업 목적 또는 기관의 영위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당 부문으로 분류
공공 및 기타	· 지방자치단체, 정부기업 등 공공기관과 학교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단체, 그리고上記 가계 및 기업 이외의 모든 부문 - 정부기업 : 철도, 통신, 전매,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기관 내에 설치된 특별회계나 기금을 의미 - 비영리단체 : 조사 및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 의료 및 기타서비스, 복지서비스, 오락 및 문화서비스, 종교단체, 전문직업단체 및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비금융활동에 종사하는 협회, 조합, 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을 의미 * <유의사항> · 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중 개인병원 및 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은 기업으로 분류하되, 대학병원 등 비영리기관의 경우 『통화금융통계조사표 작성 편람』에서는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금리조사표에서는 ‘가계’ 및 ‘기업’ 이외의 부문에 해당하므로 ‘공공 및 기타’에 포함 · 동 부문으로의 분류와 관련하여 착오가 자주 발생하므로 작성시 특히 주의 하되, 분류가 분명치 않은 경우 반드시 금리조사표 담당자와 상의

(5) 포괄범위 : 통화금융통계 조사표와의 관계

*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참고 7> 금리조사표 작성시 포괄범위 참조

- 수신의 경우는 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 제외), 양도성예금증서, RP, 표지어음, 금융채만을 대상으로 조사

— 금리조사의 목적이 대고객(기업, 가계 등) 여수신금리 추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업자 즉 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수취된 예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 예금은행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특수은행(수출입은행은 제외)이 이에 해당
- 정기예금, CD, RP 및 표지어음은 예금은행 취급분(은행간 거래분)을 제외하여 산출*
 - * 금융기관간 거래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와 대고객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가 상이
- 여수신 계정별로 하위항목중 일부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조사대상 하위항목만을 대상으로 금리, 금액을 산출하여 상위 계정의 합계를 산출*
 - * (예) 요구불예금의 경우 조사대상 하위항목인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 공금예금 및 국고예금(당좌예금, 비거주자원화예금 및 비거주자유원예금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만을 대상으로 가중평균 금리와 잔액을 산출하여 기재
- 대출의 경우는 기업, 가계, 공공 및 기타부문에 시행된 원화기준 금융자금대출금만을 조사 대상으로 함
 - 금융기관이 자체조달자금을 재원으로 대출한 금융자금대출금만을 대상*으로 함
 - * 재정자금대출, 국민투자기금대출, 특별자금대출, 차관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대출, 재형저축자금대출, 재형자금급부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대출, 은행간대여금 등은 제외
 - 이차보전과 같이 정부 등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대출은 금리조사표에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금리와 괴리되는 정도가 작거나 제외하는 데 실무상 어려움이 큰 경우에는 금리조사표 담당자와 상의 후 포함 여부 판단(자세한 사항은 <참고 5> 공공부문 지원대출상품 포함여부를 참조)
 - 주택자금대출금의 경우, 저리의 임직원대출, 이차보전대상 대출상품*은 제외됨에 유의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지방자치단체 협약 대출 등 정부 또는 공적기관으로부터 취급금리에 대해 보전받는 대출금이 금융자금대출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동 자금은 제외하고 금리, 금액 산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대출상품은 금융자금대출에 속하므로 조사대상에 포함*
 - * 단, 이차보전을 통해 이루어진 대출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자세한 사항은 <참고 6>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대출 금리 작성 방법 참조)
 - 집단대출 중 여러 회차에 걸쳐 대출이 실행되는 중도금대출의 경우, 회차별 실행금액을 해당월 신규취급액에 계상

<참고 5>

공공부문 지원대출상품 포함여부

□ 공공부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의 경우, 금리조사표 작성 시 제외를 원칙으로 함

○ 재원이 온전히 자체조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 소비자들이 직면하는 시장 금리와 괴리되는 경우가 많아, 금리조사표에 포함할 시 당 통계의 작성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 단, 지원 방법 및 수준에 따라 통계작성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가 상이하며, 실무상 제약으로 인해 모든 공공부문 지원대출을 완전히 제외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 이에 금리조사표 담당자의 판단하에 시장금리와 괴리되는 정도가 작거나, 금리조사표에서 제외하는 데 실무상 어려움이 큰 상품은 금리조사표에 포함하여 작성

※ (2022년 11월 기준) 상품별 금리조사표 포함 여부*

* 아래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들의 경우 반드시 금리조사표 담당자와 상의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

가. 금리조사표 제외 : 이차보전을 통한 지원프로그램

(ex. 코로나19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협약 대출)

나. 금리조사표 포함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정부 출자금 보전 상품(ex.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참고 6>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대출 금리 작성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연한 금융공기업으로 금융기관이 동 기업과 관련하여 취급한 대출(보증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자체 조달 자금을 재원으로 실행하는 대출은 금융자금대출에 속하므로 당행 대출금리통계 조사 대상

○ 금융기관이 최초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대출 취급 시 “신규취급액 기준” 및 “잔액 기준”통계에 모두 반영하고

이후 동 대출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기 직전 월까지 “잔액 기준” 통계에 계상하다 양도한 일(日)이 속한 월에 “잔액 기준”통계에서 제외하여야 함 (즉 금융기관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양도한 전월까지의 보유하는 기간 중 [통상 1~3개월]에는 “잔액기준” 통계에 계상)

○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대출 중 이차보전을 받는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조사표에 제외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대출상품*

* 세부 상품 및 시점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

가. 보증자리론# : (대상)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유형(u, t, 아낌-e 등) 및 특수상품여부(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특례보증자리론 등)에 관계없이 보증자리론으로 취급된 모든 상품을 포함

나. 디딤돌대출# : (대상)무주택 세대주[부부 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단,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실행하거나, 이차보전약정이 포함된 디딤돌대출은 대출금리 조사표 작성 시 제외하여야 함

다. 적격대출 : (대상)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불가]

<참고 7>

금리조사표 작성시 포괄범위 : 수신
(통화금융통계조사표(은행계정) 계정과목 기준)

코드	계정과목 명	포함 여부	비 고
LA00000	1. 원화예수금		
LA10000	1-1. 요구불예금		
LA10100	1-1-1. 당좌예금	X	
LA10200	1-1-2. 가계당좌예금	O	
LA10300	1-1-3. 보통예금	O	
LA10400	1-1-4. 별단예금	O	
LA10500	1-1-5. 공금예금	O	
LA10600	1-1-6. 비거주자원화예금	X	
LA10700	1-1-7. 비거주자자유원예금	X	
LA10800	1-1-8. 국고예금	O	
LA19900	1-1-9. 기타요구불예금	X	
LA20000	1-2. 저축성예금	O	
LA20100	1-2-1. 정기예금		예금자가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예치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일정 금액을 예입하는 기한부 예금으로서 은행 예금종목 중 가장 저축성이 강한 예금 (단, 하단의 은행예금취급기관분은 제외)
LA20110	1) 은행예금취급기관	X	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정기예금
LA20120	2) 은행예금취급기관 제외	O	은행예금취급기관 이외의 부문으로부터 수취한 정기예금 (단, 동 예금종 ELD 등 파생상품관련 정기예금은 제외)
LA20200	1-2-2. 정기적금	O	일정한 기간 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고객이 매월 일정일에 일정액을 적립하는 예금
LA20600	1-2-7. 저축예금	O	가계우대예금제도의 하나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결제성예금
LA2060A	(개인MMDA)	O	
LA20900	1-2-9. 기업자유예금	O	1988년 12월 5일 시행된 부분적인 금리자유화와 함께 제2금융권에 대한 은행의 수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 단, 예입 후 7일이 경과한 예금에 한하여 부리
LA2090A	(기업MMDA)	O	
LA30000	1-3. 수입부금	O	상호부금의 납입으로 발생한 부채를 처리하는 계정. 부금의 수입은 대변에 부금의 인출은 차변에 기입
LA40000	1-4. 주택부금	O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한국주택은행만이 취급하였으나 동 규칙 개정으로 「은행법」이 정하는 금융기관 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면 만기 또는 중도에 일정한 금액을 주택자금으로 용자 또는 금부할 것을 약정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서 상호부금과 같은 성격. 일정조건에 따라 주택청약도 가능
LC00000	2. 양도성예금증서	O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으로 인한 부채를 처리하는 계정 (단, 하단의 은행예금취급기관분은 제외)
LC01000	1. 은행예금취급기관	X	
LK00000	6.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국·공채를 타은행 또는 일반에게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매도채권 잔액을 표시하는 계정
LKA0000	6-1. 원화 환매조건부채권매도	O	원화표시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액을 주체별로 분류 (단, 하단의 중앙은행, 은행예금취급기관분은 제외)
LK10000	1. 중앙은행	X	
LK20000	2. 은행예금취급기관	X	
LM00000	5. 매출어음	O	매출어음 취급액을 주체별로 분류 (단, 하단의 은행예금취급기관분은 제외)
LM01000	1. 은행예금취급기관	X	
LV00000	1. 발행금융채권		채권을 발행한 경우 동 발행채권에 따른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
LV10000	1-1. 원화발행금융채권	O	

금리조사표 작성시 포괄범위 : 대출
(통화금융통계조사표(은행계정) 계정과목 기준)

코드	계정과목 명	포함 여부	비 고
AA00000	1. 원화대출금		
AA10000	1-1. 기업자금대출금		정부관리기업을 포함한 영리법인기업 및 개인기업에 대한 대출금
AA11000	1-1-1. 운전자금대출금		자금의 용도에 따른 구분(기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특별히 용도가 정해지지 않음)
AA11001	1-1-1-1. 금융자금대출금	○	금융기관이 자체조달자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
AA11010	1) 할인어음	○	
AA11011	1> 상업어음할인	○	
AA11012	2> 무역어음할인	○	
AA11013	3> 기타어음할인	○	
AA11020	2) 당좌대출	X	
AA11030	3) 자유원당좌대출	X	
AA11040	4) 일반자금대출	○	
AA11060	5) 적금관계대출	○	
AA11070	6) 기업운전급부금	○	
AA11080	7) 무역금융	○	
AA11100	8) 농업자금대출	○	
AA11110	9) 수산업자금대출	○	
AA11120	10) 축산업자금대출	○	
AA11130	11) 중소기업자금대출	○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 대출로서 중소기업진흥기금대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대출 등
AA11140	12) 주택자금대출	○	1988.1월부터 신규취급한 대출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취급한 대출금(근로자 개인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 또는 주택사업자에게 지원한 주택자금대출까지 포함)
AA11160	13) 기업구매자금대출	○	
AA11180	14)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AA11990	15) 기타운전금융자금대출	○	
AA11170	1-1-1-2. 재정자금대출금	X	정부 및 에너지융합리화기금, 환경개선지원기금, 재활용산업육성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공업발전기금 등 정부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자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
AA11150	1-1-1-3. 국민투자기금대출	X	1992.1월부터 신규대출 중단
AA12000	1-1-2. 시설자금대출금		자금의 용도에 따른 구분(제조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공장건물의 신·증축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하는 최장 10년의 장기대출)
AA12001	1-1-2-1. 금융자금대출금	○	
AA12010	1) 일반자금대출	○	
AA12020	2) 적금관계대출	○	
AA12030	3) 기업시설급부금	○	
AA12050	4) 농업자금대출	○	
AA12060	5) 수산업자금대출	○	
AA12070	6) 축산업자금대출	○	
AA12080	7) 중소기업자금대출	○	
AA12090	8) 주택자금대출	○	
AA12130	9) 특별설비자금대출	○	

AA12990	10) 기타시설금융자금대출	○	
AA1299A	(수출산업설비자금대출)	○	
AA12120	1-1-2-2. 재정자금대출금	X	
AA12100	1-1-2-3. 국민투자기금대출	X	1992.1월부터 신규대출 중단
AA13000	1-1-3. 특별자금대출금	X	중전의 특별중장기분할상환대출금 및 특별장기대출계정을 통합한 계정
AA20000	1-2. 가계자금대출금		개인에 대한 주택자금, 소비자금 등 비영리목적에 위한 대출과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대출
AA20001	1-2-1. 금융자금대출금	○	
AA20010	1) 당좌대출	X	
AA20020	2) 일반자금대출	○	
AA20030	3) 가계적금관계대출	○	
AA20040	4) 가계급부금	○	
AA20060	5) 주택자금대출	○	
AA20990	6) 기타가계금융자금대출	○	
AA20070	1-2-2. 재정자금대출금	X	
AA30000	1-3. 공공및기타자금대출금		지방정부, 정부기업(철도, 통신, 전매,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기관 내에 설치한 특별회계나 기금) 등 공공기관과 학교법인 등 비영리단체(각종 협회, 조합, 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 등)에 대한 대출
AA31000	1-3-1. 운전자금대출금		
AA31001	1-3-1-1. 금융자금대출금	○	
AA31010	1) 할인어음	○	
AA31020	2) 당좌대출	X	
AA31030	3) 일반자금대출	○	
AA31040	4) 적금관계대출	○	
AA31050	5) 운전급부금	○	
AA31060	6) 주택자금대출	○	
AA31080	7) 기업구매자금대출	○	
AA31090	8)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AA31990	9) 기타운전금융자금대출	○	
AA31070	1-3-1-2. 재정자금대출금	X	
AA32000	1-3-2. 시설자금대출금		
AA32001	1-3-2-1. 금융자금대출금	○	
AA32010	1) 일반자금대출	○	
AA32020	2) 적금관계대출	○	
AA32030	3) 시설급부금	○	
AA32990	4) 기타시설금융자금대출	○	
AA32100	1-3-2-2. 재정자금대출금	X	
AA40000	1-4. 차관자금대출금	X	일본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화대출을 처리
AA50500	1-5. 국민주택기금대출금	X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재원범위내에서 취급하는 대출로 영세민전세자금대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등
AA50100	1-6. 재형저축자금대출금	X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1987.5.30.)"에 의거 근로자재산형성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서민금융 또는 영세기업자금 등으로 용자
AA50200	1-7. 재형자금급부금	X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재산형성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상호부금형식으로 서민금융 또는 영세기업자금 등으로 용자
AA50300	1-8. 농어가사채대체자금대출금	X	
AA50400	1-9. 은행간대여금	X	타행에 취급하는 대출을 처리

Ⅲ. 주요 여수신 금리조사표

1. 은행계정 수신금리

(1) 결제성 예금

- 결제성 예금에 해당하는 요구불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은 잔액기준 금리, 금액만이 작성대상이며,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는 매월말 (가)결산시 작성하는 이문율*을 기재

* ((손익계산서상 월중지급이자총액)/(월중평균잔액))×365/(월중일수)

1) 요구불예금

- 포괄범위는 통화금융통계조사표상 [원화예수금-요구불예금*(LA10000)]**

* 요구불예금(LA10000)의 ()내에 있는 LA10000은 통화금융통계조사표의 계정과목 코드에 해당(<참고 7> 참조, 이하 동일)

** 당좌예금은 무이자예금인 관계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 가계당좌예금(LA10200), 보통예금(LA10300), 별단예금(LA10400), 공금예금(LA10500), 국고예금(LA10800)으로 구분

2) 저축예금

- 포괄범위는 통화금융통계보고서상 [원화예수금-저축성예금-저축예금(LA20600)]

— 하위항목으로 개인 MMDA(LA2060A, 기존 시장금리부예금)를 기재

3) 기업자유예금

- 포괄범위는 통화금융통계보고서상 [원화예수금-저축성예금-기업자유예금(LA20900)]

— 하위항목으로 기업 MMDA(LA2090A, 기존 시장금리부예금)를 기재

(2) 저축성 예금

1) 정기예금

- 포괄범위는 통화금융통계조사표상 [원화예수금-저축성예금-정기예금-은행예금취급기관제외 정기예금(LA20120)]
 - 정기예금중 동업자로부터 예수받은 예금이 제외된 ‘은행예금취급기관제외 정기예금’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 ELD(주가지수연계예금) 등 파생상품관련 정기예금*은 제외
 - * 파생상품관련 정기예금은 금리결정이 주가지수, 환율 등 국내외 각종 경제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정기예금
 - 복합정기예금(일반 정기예금과 파생관련 정기예금이 합쳐진 상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 부분만 포함
- 기간분류는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하되, 회전식정기예금은 회전기간을 기준으로 만기 분류 (<참고 8> 회전식 정기예금 관련 주의사항 참조)
- 평균금리와 월중신규취급액은 ‘수신금리(1)Sheet의 평균금리, 합계와 링크되어 있으므로 ‘수신금리(1)Sheet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됨’
 - 평균금리와 월말잔액은 ‘수신금리(2)Sheet의 평균금리, 합계와 링크되어 있으므로 ‘수신금리(2)Sheet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됨

<참고 8>

회전식 정기예금 관련 주의사항

- 약정 만기를 기준으로 기간을 분류하는 일반 정기예금과 달리, 회전식정기예금*은 회전기간을 기준으로 만기 분류**
 - * 약정만기 이내에서 회전기간(1, 2, 3, 6개월 등)을 단위로 회전기간에 응당하는 금리를 변동 적용하는 정기예금으로 회전기간 경과후 중도해지시에는 기경과한 회전기간에 대한 이자를 정상 지급
 - ** 약정만기가 1년이고 회전기간이 3개월인 회전식 정기예금의 경우 신규 및 잔액 만기는 3개월임
- 약정만기내 회전기간 도래 후 자동 재예치분은 신규취급액에서 제외하며, 재예치분의 만기 및 회전금리를 적용하여 잔액 통계에만 포함

2) 정기적금

포괄범위는 통화금융통계조사표상 [원화예수금-저축성예금-정기적금(LA20200)]

- 참고로,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 기타 적립식예금은 신규취급액이 미미하거나 신규수신이 중단된 상품이므로 편제대상에서 제외

3) 상호부금

포괄범위는 통화금융통계조사표상 [원화예수금-수입부금(LA30000)]

4) 주택부금

포괄범위는 통화금융통계보고서상 [원화예수금-주택부금(LA40000)]

(3) 시장형 금융상품

1) 양도성예금증서(CD)

포괄범위는 통화금융통계조사표상 [양도성예금증서(LC00000)]에서 [은행예금취급기관(LC01000)]분을 제외

- 은행간CD를 제외한 對고객 CD만을 대상으로 함

적용금리는 할인율을 연수익률로 환산한 금리

- 평균금리와 월중신규취급액은 '수신금리(3)'Sheet의 평균금리, 합계와 링크되어 있으므로 '수신금리(3)'Sheet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됨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

포괄범위는 통화금융통계보고서상 [원화 RP매도(LKA0000)]에서 [중앙은행(LK10000)]분과 [은행예금취급기관(LK20000)]분을 제외

- 원화RP중 對한국은행, 對예금은행 RP를 제외한 對고객 RP만을 대상으로 함

3) 표지어음매출

- 포괄범위는 통화금융통계조사표상 [매출어음(LM00000)]중 [은행예금취급기관(LM01000)]분은 제외
 - 對예금은행 매출분을 제외한 對고객 매출분만을 대상으로 함
 - 매출어음(LM00000)에 일반어음매출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어음 매출분은 제외
- 적용금리는 할인율을 연수익률로 환산한 금리

4) 금융채

- 포괄범위는 통화금융통계보고서상 [발행금융채권-원화발행금융채권(LV10000)]이며 기간 분류는 약정만기 기준
- 금융채는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 후순위채, 전환사채 등으로 구분
 - 할인채는 1년, 2년, 3년 및 기타만기로, 이표채는 3년, 5년, 7년 및 기타만기로, 복리채는 1년, 3년, 5년 및 기타만기로 구분
 - 해당만기가 없는 경우 기타만기로 구분, 예를 들어 이표채 1년 6개월의 경우 이표채 기타만기로 분류
 -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 중 후순위채나 전환 사채 등 특수형태의 금융채는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에서 제외하고 별도 항목으로 구분
 - 후순위채는 종류(할인채, 이표채, 복리채 등)나 만기구분없이 후순위채 전체를 포함
 - 전환사채 등은 종류(할인채, 이표채, 복리채 등)나 만기구분 없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 사채, 교환사채, 구조화채권* 등 특수형태의 금융채 전체를 포함
 - * 채권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상품으로 채권의 원금과 이자지급이 금리, 환율, 통화 및 주식 등의 기초 자산과 연동되어 결정되는 채권(inverse FRN, power spread note, CMS spread note 등)
- 적용금리는 발행수익률을 적용

(4) 주체별 분류

1) 정기예금

□ 정기예금을 기업, 가계, 공공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주체별 구분은 <참고 4> 주체별 포괄범위 참조

2) 금융채

□ 금융채(할인채+이표채+복리채)를 창구발행분, 중개기관 경유 발행분(이하 중개기관발행분)으로 구분하여 금리, 금액을 별도 기재

3) 양도성예금증서

□ 양도성예금증서를 기업*, 가계, 공공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참고 4> 주체별 포괄범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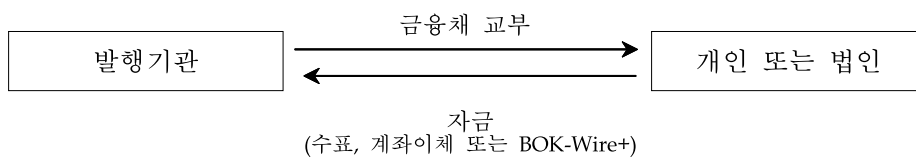
— 또한, 양도성예금증서를 창구발행분*, 중개기관발행분으로 구분하여 기재(<참고 9> 창구 발행 및 중개기관 경유 발행 참조)

* 은행간 CD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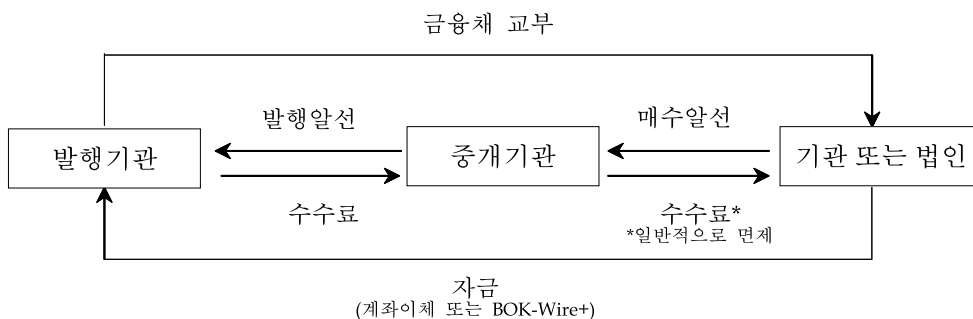
<참고 9>

창구발행 및 중개기관 경유 발행

① 창구발행



② 중개기관 경유 발행



2. 은행계정 대출금리

- 당좌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월중 빈번한 신규대출로 신규취급액이 과대계상되어 대출평균금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항목별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조사시는 조사항목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여 작성
 - 각 항목별 잔액기준 금리조사시에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포함하되, 당좌대출은 제외
 - 다만,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은 별도항목(아래의 내용 중 (6)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대출 참조)을 통해 신규 및 잔액 기준 금리, 금액을 기재
 - 주택자금대출금 중 저리의 임직원대출, 지방자치단체 협약 대출도 신규 및 잔액기준 금리조사에서 제외
- 대출상품을 만기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약정 만기를 기준으로 기간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대출중 만기연장 건(대환, 재약정을 제외한 단순만기연장)에 대해서는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약정된 기간을 적용*
 - * 예시) 3년만기 대출의 만기시점에서 만기가 1년 연장된 경우, 해당 건은 만기 1년의 대출로 분류
- 재정자금대출 · 이차보전 등과 같이 정부 등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대출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p.5 참조)

(1) 금융자금대출

- 금융자금대출은 금리조사표상 기업자금대출((2)), 가계자금대출((3)), 공공및기타자금대출((4))의 합계를 나타냄

(2) 기업자금대출

- 기업자금대출은 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 용도별로는 운전자금·시설자금, 담보형태별로는 물적담보·예적금담보·보증·신용 대출로 분류
 - 대기업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법인 기업을 의미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업들을 의미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은 통화금융조사표상 분류에 의거 작성
 - 담보형태별 분류는 아래의 <참고 10> 담보형태별 대출금 분류에 의거 분류

<참고 10>

담보형태별 대출금 분류¹⁾

분 류	내 용
1. 물적담보대출	부동산, 유가증권, 각종 동산 등 물적담보를 취득하고 취급한 대출
2. 예적금담보대출	예·적금, CD, 표지어음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하여 취급된 대출
3. 보증대출	보증보험, 정부,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건설공제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실행된 대출* * 보증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의 지급보증 또는 개인의 연대보증은 신용대출로 분류
4. 신용대출	일반법인지급보증, 개인연대보증, 순수신용에 의한 대출

주 : 1) 단, 특정대출건이 2가지 이상의 담보형태로 취급된 경우(일부 보증과 일부 신용 등) 담보가액이 가장 큰 담보형태로 분류(예 : 1억원의 기업대출이 보증서담보가액 7천만원, 신용담보가액 3천만원으로 취급된 경우, 보증대출 1억원으로 구분)

(3) 가계자금대출

□ 가계자금대출은 담보형태별로 물적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의 금리, 금액을 조사하며, 소액대출을 별도 조사

— 담보형태별 분류는 기업자금대출의 담보형태별 분류와 동일하므로 <참고 10> **담보형태별 대출금 분류** 참조

· 가계자금대출의 경우 물적담보대출의 하위항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사

*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에 따름

· 보증대출의 하위항목으로 보증부전세자금대출*과 기타보증대출*을 별도 조사하고, 기타보증대출의 하위항목으로 보증부집단대출**과 보증부기타대출**을 별도 조사

* 보증부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으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을 의미하고, 기타보증대출은 보증부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한 보증대출을 말함

** 보증부집단대출은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으로 실행된 공동주택 분양 관련 집단대출을 의미하고, 보증부기타대출은 보증부집단대출을 제외한 기타보증대출을 말함

· 신용대출의 하위항목으로 일반신용대출*과 집단대출*을 별도 조사

* 집단대출은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로서 신용대출로 구분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법인지급보증, 연대보증(인보증) 또는 무담보 순수신용으로 취급된 대출을 의미하고, 일반신용대출은 집단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을 말함

— 소액대출은 가계대출중 5백만원이하 대출을 의미

(4) 공공및기타자금대출

□ 공공및기타부문*에 대한 대출에 대한 금리, 금액을 조사

* 동 부문으로의 분류와 관련하여 착오가 자주 발생하므로 작성시 특히 주의하되, 분류가 분명치 않은 경우 반드시 금리조사표 담당자와 상의

(5) 종별 대출

- 금융자금대출 중 상업어음할인, 기업일반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평균금리를 작성

* 주택담보대출, 보증부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자금대출 중에서 저리의 임직원대출, 지방자치단체 협약 대출 등은 제외

- 상업어음할인 : 통화금융통계조사표상 [기업-운전-금융-상업어음할인(AA11011)]
- 기업일반자금대출 : 통화금융통계조사표상 [기업-운전-금융-일반자금대출(AA11040)] + [기업-시설-금융-일반자금대출(AA12010)]
- 주택자금대출 : 통화금융통계조사표상 [기업-운전-금융-주택자금대출(AA11140)] + [기업-시설-금융-주택자금대출(AA12090)] + [가계-금융-주택자금대출(AA20060)] + [공공및기타-운전-금융-주택자금대출(AA31060)]

(6)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 금융자금대출 중 주체별(기업, 가계, 공공 및 기타)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에 대한 평균금리, 금액을 작성

- 마이너스통장대출의 신규취급액은 대출약정을 신규(기한연장)로 맺은 월에 해당계좌의 마이너스대출 말잔금액으로서 이후 발생한 말잔의 변동은 신규취급액에 포함하지 않음

- 잔액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약정을 맺은 모든 계좌의 마이너스대출 말잔금액

3. 고정금리 및 특정금리연동 대출금리 및 규모

- '2. 은행계정 대출금리'에서 작성한 기업자금대출(NA999999M) 및 중소기업대출(NC999999M), 가계자금대출(NN999999M) 및 주택담보대출(LN999999M), 보증부전세자금대출(LX999999M)을 대상으로 고정금리대출, 특정금리연동대출을 구분하여 신규 및 잔액 기준의 금리, 금액을 조사

- 혼합형대출 즉, 대출약정기간중 대출금리 조건이 변경되는 대출의 경우(예 : 고정 → 특정금리연동), 신규취급액은 신규취급시점의 대출금리 조건에 따라 분류하고 잔액은 잔액작성시점의 대출금리 조건에 따라 분류

- 다만, 동 대출의 규모를 별도 파악하기 위해 혼합형대출(대출약정시 대출금리 조건이 변경되는 모든 대출) 기재란이 각 대출금 하단에 있음

(예) 2013.1월 신규취급시점에 고정금리대출인 경우 고정금리대출(+혼합형대출 기재란의 신규취급액 및 잔액)로, 2014.1월 잔액 작성시점에 특정금리연동대출인 경우 특정금리연동대출(+혼합형대출 기재란의 잔액)로 분류

(1) 고정금리 대출

□ 대출받은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가 대출 약정기간중 변동되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는 대출(예: 대출 약정기간 내내 연3% 금리 부과)

—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약정기간중 대출고객이 부담하는 금리가 고정되어 대출금리의 변동가능성이 없는 대출로서, 시장금리나 원화대출기준금리 등 특정금리에 연동하여 대출이 취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대출약정기간중 대출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포함

(예) 대출취급시 금리결정은 'CD유통수익률+3%=5.88%'과 같이 하고, 동 금리수준이 계약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분류

(2) 특정금리연동 대출 (변동금리 대출)

□ 대출약정기간중 대출받은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가 특정금리에 연동되어 있어 일정 주기별로(예: 1개월, 3개월) 적용금리 수준이 변동하는 모든 대출

① 프라임레이트연동

— 프라임레이트에 연동되는 대출

② 원화대출기준금리연동

— 원화대출기준금리는 은행들이 원화대출시 적용하기 위해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금리로, 보통 시장금리와 수신금리 등을 혼합한 바스켓 방식으로 만들어 운용하고 있음

③ 시장금리연동

— CD금리, 금융채금리 등과 같은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대출, 또는 시장금리를 기준지표로 하고 있어 시장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부이전금리에 연동되는 대출 등

(i) CD금리연동 : CD금리에 연동되는 대출

(ii) 금융채금리연동 : 금융채(산금채, 중금채 포함)금리에 연동되는 대출

(iii) 국고채금리연동 : 국고채금리에 연동되는 대출

(iv) 회사채금리연동 : 회사채금리에 연동되는 대출

(v) **KORIBOR연동** :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에 연동되는 대출

(vi) **내부이전금리연동** : 내부이전금리(Fund Transfer Price:FTP)*에 연동되는 대출

* 은행의 본지점간 자금이동에 적용되는 금리로, 기일물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더하여 만들어진 금리

** 은행의 본지점간 자금이동에 MOR(Market Opportunity Rate)을 적용하는 은행의 경우,

① 기일물 기준금리에 스프레드를 더하는 경우 → 내부이전금리연동 대출로 구분

② 기일물 기준금리에 스프레드를 더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 기준이 되는 금리로 재분류(예 : 3개월 MOR의 기준금리가 3개월 CD유통수익률인 경우 CD유통수익률 연동으로 분류)

(vii) **기타시장금리연동** : 시장금리연동대출로서 위 (i)~(vi)에 해당되지 않는 대출. 동 항목으로 구분되는 대출이 있을 경우 **금리조사표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

④ 수신금리연동

— 특정 수신금리에 연동되는 대출

⑤ COFIX연동

—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 COFIX(Cost of funds inde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는 대출

(i) **신규COFIX연동** : 신규COFIX에 연동되는 대출

(ii) **잔액COFIX연동** : 잔액COFIX, 신잔액COFIX에 연동되는 대출

(iii) **단기COFIX연동** : 단기COFIX에 연동되는 대출

(iv) **혼합COFIX연동** : 신규COFIX, 잔액COFIX, 신잔액COFIX, 단기COFIX 등을 혼합한 지수에 연동되는 대출

⑥ 기타금리연동

— 특정금리연동대출로서 ①~⑤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 동 항목으로 구분되는 대출이 있을 경우 **금리조사표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

※ 혼합형 금리

앞서 고정금리대출 또는 특정금리연동대출로 기재된 내역들 중 혼합형대출에 해당하는 자료를 따로 산출하여 혼합형 금리란에 별도 기재

(예) 1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3년은 고정금리로, 이후 7년은 CD금리연동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한 대출의 금리와 금액을 기재

4. 기타 사항

(1) 신탁계정 대출금리

- 은행계정 여수신금리 작성방법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신탁계정에서 발생한 대출을 주체별(기업, 가계, 공공 및 기타)*로 구분하여 신규 및 잔액 기준의 금리, 금액을 기재

* <참고 4> 주체별 포괄범위 참조

(2) 연체대출금리

- 은행계정 연체대출 적용금리를 기입하며 연체대출금리를 단일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금리란에 바로 기재하고, 차주별 기간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경우 최저금리를 단기(최저)에 최고금리를 장기(최고)란에 기재

(3) 기타 금리

- 새희망홀씨대출 :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예금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대출
-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간(보통 10~30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주택담보대출로, **보금자리론 시스템을 통해 취급되는 모든 대출을 포괄**(ex.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특례보금자리론 포함)
- 적격대출 : 금융기관의 장기고정금리 내집마련 대출의 재원 공급을 위해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구조(유동화)를 취함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4) 혼합형 주택담보대출금리

-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조건별 현황(고정 및 특정금리연동 금리 및 대출규모)을 신규취급액, 잔액기준으로 기재

— 전체 평균금리 및 금액 합계는 '3. 고정금리 및 특정금리연동 대출금리 및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항목(ZB300000S)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IV. 기타 세부내역*

* 주요 여수신금리 조사표의 조사항목중 대표 수신상품인 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 그리고 주체별·용도별 대출금 항목들을 대상으로 금리분포를 조사

1. 공통사항 안내

- 금리구간은 0.25%p간격으로 0.00%~15.00%(대출금리는 0.00%~40.00%)까지 구분되어 있음
- 동 조사표는 '주요 여수신금리 조사표'와 링크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 금액이 없는 금리구간이라도 행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행숨기기 기능을 이용할 것
- 마지막행의 CODE를 삭제하지 말 것

2. 정기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 취급현황

(1) 조사항목 및 포괄범위

- 주요 여수신금리 조사표의 대표 수신상품인 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조사항목별 포괄범위는 아래와 같음

조사항목	포괄범위*
(1) 정기예금 취급현황(신규기준)	정기예금(DC999999M)의 신규취급액과 동일
(2) " (잔액기준)	정기예금(DC999999M)의 잔액과 동일
(3) 양도성예금증서 취급현황(신규기준)	양도성예금증서(IA999999D)의 신규취급액과 동일

* '2. 주요 여수신금리 조사표'참조

(2) 작성방법

- 수신상품별로 약정금리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금리구간에 기재
 - 분할입출금식 정기예금의 경우는 분할입금건별로 신규취급건으로 간주하여 약정만기와 금리, 신규취급액을 적용
 - (잔액기준) 분할입출금식 정기예금은 분할입금건별로 약정만기와 금리, 월말잔액을 적용

- 평균금리는 (i) 신규기준의 경우 (건별 약정금리* X 건별신규취급액)의 합계를 (신규취급액)의 합계로 나누어 가중평균한 금리를, (ii) 잔액기준의 경우 (건별 약정금리 × 건별잔액)의 합계를 (잔액)의 합계로 나누어 가중평균한 금리를 각각의 조사표에 기재

* 양도성예금증서의 적용금리는 할인금리 기준

- 평균금리와 합계는 '주요여수신'Sheet의 정기예금 신규취급액기준 평균금리, 월중신규취급액과 링크되어 있음
- 잔액기준 평균금리와 합계는 '주요여수신'Sheet의 정기예금 잔액기준 평균금리, 잔액과 링크되어 있음
- 양도성예금증서의 평균금리와 합계는 '주요여수신'Sheet의 양도성예금증서 신규취급액기준 평균금리, 월중 신규취급액과 링크되어 있음

3. 주체별 용도별 대출금 취급현황

(1) 조사항목 및 포괄범위

- 주요 여수신금리 조사표의 대출의 주체별 용도별 분류와 동일하며, 조사항목별 포괄범위는 아래와 같음

조사항목	포괄범위 ¹⁾
주체별 용도별 대출금 취급현황(신규기준)	대기업(NB999999M), 중소기업(NC999999M), 운전자금(NI999999M), 시설자금(NJ999999M), 가계자금대출(NN999999M), 가계_소액대출 ²⁾ (NO999999M), 공공및기타자금대출(NQ999999M)의 신규취급액과 동일
” (잔액기준)	대기업(NB999999M), 중소기업(NC999999M), 운전자금(NI999999M), 시설자금(NJ999999M), 가계자금대출(NN999999M), 가계_소액대출 ²⁾ (NO999999M), 공공및기타자금대출(NQ999999M)의 잔액과 동일

주 : 1) '2. 주요 여수신금리 조사표' 참조
 2) 가계대출중 5백만원이하 소액대출

(2) 작성방법

- 대출금의 월중 신규취급액(월말 잔액)을 약정금리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금리구간에 기재
- 평균금리는 (i) **신규기준의 경우** (건별 대출금리 × 건별신규취급액)의 합계를 (신규취급액)의 합계로 나누어 가중평균한 금리를, (ii) **잔액기준의 경우** (건별 대출금리 × 월말잔액)의 합계를 (월말잔액)의 합계로 나누어 가중평균한 금리를 각각의 조사표에 기재

V. 오류검증 안내

1. 주요 여수신 금리조사표 오류검증

□ 주요여수신 금리조사표의 오차 검증은 다음의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 1단계 I열~L열 : 해당 은행에서 입력한 금리 및 금액을 재계산(하위항목의 가중평균 금리, 합계금액 등)하고 기타세부항목 Sheet(수신금리(1)~대출금리(2))에 해당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수치를 주요여수신 Sheet에 끌어옴

— 2단계 N열~Q열 : D열~G열의 연관성 있는 항목*간의 차이를 계산하고, D열~G열의 해당 은행에서 입력한 수치와 I열~L열의 금리조사표에서 자동적으로 재계산된 수치의 차이를 계산

* (예) 대출금리 항목에 기재한 기업자금대출(NA999999M)의 금리 및 금액은 고정금리 및 특정금리연동 대출규모에 기재한 기업자금대출(ZA999999M)의 금리 및 금액과 일치해야 함

— 3단계 S열~V열 : N열~Q열의 오차 금리 및 금액이 일정 수준의 허용 오차*를 상회할 경우, S열~V열의 회색 셀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오차발생'이라는 문구를 표시

* 단수 차이를 감안하여 금리는 10bp 미만, 금액은 1,000만원 미만까지의 오차를 허용

□ 각 항목에 대하여 금액만 기재하고 해당 금리를 기재하지 않거나 0으로 표시한 경우 회색 셀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금리미기재' 문구 표시

□ '오차발생' 혹은 '금리미기재'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금리작성자는 오류를 확인하여 해당 항목을 수정해야 하며 발생한 오류가 타당한 경우 Z열의 푸른색 셀에 오류 발생 사유를 기재

2. 기타 세부내역 오류검증

(1) 정기예금 취급현황

□ 금액 오류 검증

— M열은 B열~H열까지의 만기별 정기예금 합계가 J열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차발생' 문구를 표시

- N열은 I열의 1년 만기 금액이 D열의 1년이상 2년미만 금액을 초과할 경우* '오차발생' 문구를 표시

* 단수 차이를 감안하여 500만원 미만까지의 오차를 허용

금리 오류 검증

- 79행(잔액기준 Sheet는 77행)은 각 금리구간별 하한금리와 각 금리구간별 금액을 이용하여 구한 가중평균하한금리, 각 금리구간별 상한금리와 각 금리구간별 금액을 이용하여 구한 가중평균상한금리 사이에 은행에서 69행에 기재한 평균금리(잔액기준 Sheet는 67행)가 위치하는지 검증하는 식으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오류발생' 문구 표시*

* 전월에 입력하였던 수치를 변경하지 않거나 행이 밀려서 입력되는 경우 오류가 자주 발생하므로 '오류발생' 문구가 나타날 경우 우선적으로 두 가지 사항을 확인

(2) 양도성예금증서 취급현황

금액 오류 검증

- K열은 B열~G열까지의 만기별 양도성예금증서 합계가 H열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차발생' 문구를 표시

* 단수 차이를 감안하여 500만원 미만까지의 오차를 허용

금리 오류 검증

- 77행은 각 금리구간별 하한금리와 각 금리구간별 금액을 이용하여 구한 가중평균하한금리, 각 금리구간별 상한금리와 각 금리구간별 금액을 이용하여 구한 가중평균상한금리 사이에 은행에서 67행에 기재한 평균금리가 위치하는지 검증하는 식으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오류발생' 문구 표시*

* 전월에 입력하였던 수치를 변경하지 않거나 행이 밀려서 입력되는 경우 오류가 자주 발생하므로 '오류발생' 문구가 나타날 경우 우선적으로 두 가지 사항을 확인

(3) 주체별 용도별 대출금 취급현황

금액 오류 검증

- M열은 B열의 기업자금대출합계가 대기업대출+중소기업대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차발생' 문구를 표시

- N열은 B열의 기업자금대출합계가 운전자금대출+시설자금대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류발생' 문구를 표시
- O열은 G열의 가계자금대출합계보다 H열의 소액대출이 클 경우* '오차발생' 문구를 표시
- P열은 J열의 금융자금대출합계가 기업자금대출+가계자금대출+공공및기타자금대출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차발생' 문구를 표시

* 단수 차이를 감안하여 500만원 미만까지의 오차를 허용

□ 금리 오류 검증

- 180행(잔액기준 Sheet는 179행)은 각 금리구간별 하한금리와 각 금리구간별 금액을 이용하여 구한 가중평균하한금리, 각 금리구간별 상한금리와 각 금리구간별 금액을 이용하여 구한 가중평균상한금리 사이에 은행에서 169행에 기재한 평균금리(잔액기준 Sheet는 168행)가 위치하는지 검증하는 식으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오류발생' 문구 표시*

* 전월에 입력하였던 수치를 변경하지 않거나 행이 밀려서 입력되는 경우 오류가 자주 발생하므로 '오류발생' 문구가 나타날 경우 우선적으로 두 가지 사항을 확인

<기타 안내>

- 본 편람 및 금리조사표 서식은 한국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조사표 작성요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통계팀 가중평균금리 담당자 (02-759-5348, 02-759-5266)에게 문의 바랍니다.